

준비서면

사 건 2000가합7960 손해배상(기)
 원 고 이근목 외5
 피 고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서론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원고들을 징용에 의하여 강제로 히로시마에 위치한 공장에 연행한 뒤에 강제노동을 시키고,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에 원고들에 대하여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원고들을 강제로 연행하여 강제노동을 시켰음에도 종전 후에 원고들을 안전하게 고향으로 송환할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임금을 미지불하고 국민저축 금액을 미환불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제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국내법적으로도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의 불법행위책임과 원고들에 대해서 미불임금 및 국민저축 금액을 환불할 의무(이하에서는 총칭하여 "미불임금"이라고만 하겠습니다)를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의무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들의 청구는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중복제소에 해당하고 "대한민국과일본국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이하 '청구권

협정'이라고만 하겠습니까)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고, 가사 그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완성이나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이상의 논점을 순차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과 유사한 성격의 사건이 미국 및 일본국에서 진행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일본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사실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일본국 최고재판소에서 심리중이며, 원고들과 같은 피징용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기한 소송 역시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하여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국제재판관할을 가지지 않는 대한민국 부산지방법원에 제소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가. 국제사법 신설 전에 인정되어 오던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원칙이나 국제사법상의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원칙 모두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국제재판관할을 가지지 않는 법원에 제소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2001. 7. 1.자로 신설된 국제사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도 않았고, 이에 관한 대한민국의 성문의 법규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설은 국제재판관할의 유무의 결정은 국제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에서 재판하는 것이 사건의 적정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당사자에게 공평하며, 능률적인가를 고려하여 국제사건에 적절한 관할배분원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

○ ○

국 대법원의 판례 역시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2001. 7. 1.부터 시행된 국제사법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실질적인 관련"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는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 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한편 국제사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부칙의 규정은 국제사법 시행 전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어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 개정된 국제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제재판관할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하지, 이 사건과 같이 국제재판관할의 존

재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도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신설된 국제사법의 시행 전후를 불문하고 국제재판관
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
능성 및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 등의 측면에서 당
해 사건이나 당사자가 법정지와 실질적인 관련을 가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된 기준인 (1) 소송당
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 이익, (2)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 및 국가의
이익, (3) 법정지와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일본국의 재판소가 국제재판관할을 가진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첫번째, 당사자의 공평, 편의 및 예측가능성의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들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김돈영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일본국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
건과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1심 및 2심에서 모두 패소판
결을 받고 일본국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여 현재 그 상고심이 계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일본국에서 기존에 진행되던 소송
을 계속해서 수행함에 있어서 여하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
습니다. 그에 비하여 이미 원고들 중 일부의 제소에 따라 동일한
사안으로 일본국에서 재판을 수행중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지점
이나 영업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대한민국에서 다시 재
판을 받으라는 것은 당사자의 공평이나, 편의 및 예측가능성의 측

면에서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두번째,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의 측면을 살펴 보겠습니다. 이미 일본국 재판소에서 원고들 대부분의 제소에 따라서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2심까지의 재판이 완료되었다는 점, 그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사실 및 미불임금에 대해서 일본국 내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인 피고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동일한 회사인지, 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구 미쓰비시중공업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탁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본국 법률의 해석 및 그 시행과정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한데 그러한 증거자료는 전부 일본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 많은 증거자료에 대해서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된 점 및 피고는 일본국 법인으로서는 일본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대한민국 내에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 일본국이 훨씬 용이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것은 일본국 재판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번째, 법정지와 당사자 및 분쟁사안과의 실질적인 관련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일본국내 구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및 원폭투하 후의 차별적인 구호조치라는 내용이고 미불임금 역시 일본국 내 구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의 미불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원인사실이 모두 일본국 법인인 과거의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일본국내 공장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원고들 주장의 권리의 상대방 당사자인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일본국 법인이며, 피고 역시 일본국 법인이고 대한민국 내에 어떠한 지점이나 사무소,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서,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및 분쟁사안은 모두 대한민국 보다는 일본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사법이 신설되기 전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국제재판관할의 인정원칙이나 신설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국제재판관할의 인정원칙 모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지 않고, 일본국 재판소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법원에 제소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조항을 참고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제사법 신설전의 국제재판관할의 분배 원칙에 대하여 판결한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은,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는 원칙 하에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일단 이를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는 있으나 "토지관할을 적용한 결과가 재판의 적정, 공평, 신속이라는 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반한다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신설된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결국 위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과 동일한 취지를

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들이 원용하는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규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통재판적의 인정가능 여부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02. 1. 26. 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된 현행 민사소송법 제5조 제2항은 외국법인의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경우 대한민국에 사무소·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업무담당자를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보통재판적의 규정에 기하여서 이 사건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구 부산연락사무소(다만 현재 이 부산연락사무소는 폐쇄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피고회사의 대한민국 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민사소송법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무소·영업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의 부산연락사무소는 단순히 연락사무만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실제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지사나 지점이 아니어서 위 조항에서 정한 사무소나 영업소라고 할 수 없으며,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으므로 주된 업무 담당자의 주소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도 구 부산연락사

무소는 사무실 하나와 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바, 그 규모나 조직으로 보더라도 사무소·영업소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연락사무소는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대표자의 선정이나 영업소의 설치등기(상법 제614조)도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연락사무소가 영업을 총괄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과거에 이 정도 규모의 연락사무소를 하나 두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응소를 강제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이념에 비추어 보아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 동경지방법재판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선행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피고의 사무소가 일본국내 존재하고 있다는 점만을 가지고 일본국 재판소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도 있습니다(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1. "국제소송경합" 번역문 제68 내지 70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의 적용 가능 여부

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에 기하여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들이 소장에서 주장한 바에 의하더라도 그 강제노동이나

원폭투하 후의 차별적인 구호조치와 같은 불법행위가 일본국에서 행해지고 그 결과 역시 일본국에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불법행위지는 일본국으로서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여지는 없습니다. 더욱이 불법행위지의 개념은 민사소송법의 그것과는 달리 국제민사소송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국제소송의 적정, 공평, 신속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
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미불임금 및 강제노동이나 차별적 구호조치에 관한 자료가 어느 정도나 대한민국에 남아있어 그것이 어느 정도나 증거수집에 편의를 가져올 것인지 심히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원고들이 국내에서 강제징용되어 부산에서 집결한 뒤 일본으로 건너갔었고,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부산을 통해서 귀국하였음을 들어서 부산지방법원에 관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징용은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무관하게 당시 일본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부산항을 통하여 귀국하였다는 것 역시 불법행위와 무관한 사정으로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될 수 없습니다.

(3)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의 적용 가능 여부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에 기초하여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 있어서 미불임금 등은 그러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일본국 내가 그 의무이행지라고 할 것이므로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에 기한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보면, 불법행위 기타 법정채무에 대해서 의무이행지의 관할을 인정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주소지국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의 응소를 강제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한다고 하여 의무이행지라고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1981. 10. 16.자 일본최고재판소 판결을 원용하면서, 일본인인 원고들이 말레이시아 연방국의 항공사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가 원고들의 주소지를 의무이행지로 보아 관할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피해자들이 일본국내에 거주하여 일본국이 의무이행지임을 근거로 하여 일본국 재판소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연방국의 항공사가 동경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였던 것을 이유로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 사안으로서(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1. "국제소송경합" 번역문 제64 내지 66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습니다.

(4) 재산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의 적용 가능 여부

민사소송법 제11조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

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재산소제지의 특별재판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재산소제지의 특별재판적에 기초하여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소제지의 특별재판적에 대해서는 재산의 소재라는 우연한 사실에 근거하여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게 된다면 전형적인 과잉관할이 되어 국제재판관할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 규정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미미한 규모의 부산연락사무소의 재산가액과 청구금액 간의 합리적 상관관계가 없고 양자간의 내적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으며, 이미 위 부산연락사무소가 폐쇄되어 집행을 위한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다는 것은 민사소송의 이념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원고의 다른 주장 역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고들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당한 주권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국제화된 사회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원이 일반적인 법원칙에 반하여 자국민만을 특별하게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러한 국수주의적

인 사고는 오히려 다른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은 굳이 설명을 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상의 기본원칙상 무조건 자국민이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하여 자국 법원에 관할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음은 자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원고들은 스스로 일본국 재판소를 법정외로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뒤늦게 자신들의 선행행위에 반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자신들이 선택한 일본국 재판소가 국제재판관할을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러한 요구는 국가가 정당한 주권행사로서 국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뒤 그 결과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내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면, 재판절차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국가간에 상호 모순되는 판결이 초래되어 국제적인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국제적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가. 외국에서 진행되는 재판절차에서 선고될 판결이 장차 대한민국 내에서 승인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선행하는 외국사건과 내용이 동일한 중복사건의 제소는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서로 다른 여러 국가의 법원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되는 국제적 중복제소는, (1) 중복제소를 당하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다수의 국제재판관할하의 법정에서 응소를 강제함으로써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게 되고,

(2) 수개의 국제재판관할하의 법정들이 불필요한 소송을 중복처리하게 되어 보다 충실한 심리를 받아야 할 다른 사건의 처리에 소요될 사법적 자원을 낭비하게 되어 공정하고 경제적인 사법의 이념에 반하게 되며, (3) 특히 두개의 소송의 결과가 서로 저촉하는 경우에는 오늘날과 같이 대부분의 거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져 수개의 국제재판관할 영역에 걸치는 상황에서는 거래의 안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많은 문제점과 위험을 야기하게 됩니다.

특히 전소의 절차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보다 유리한 다른 국제재판관할하의 법정에서 다시 소송을 함으로써 전소의 불리함을 만회하고자 하는 중복제소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원고가 법정을 선택함에 있어서 잘못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법정을 선택하여 피고의 응소를 강제한 뒤에 다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중복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원고의 실수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등의 부담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부당하여 결코 허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국제적 중복제소를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결국 당사자들의 forum shopping이나 무한정의 반복제소 등을 긍정할 위험이 있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범위 내에서 국제적 중복제소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통설은 외국에서 진행되는 선행사건에서 선고될 판결의 효력이 장차 우리나라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중복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승인예측설을 취하고 있습니다(국제적 중복제소의 제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독일, 일본, 미국 및 우리나라의

학설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의 2001. 2. 7.자 준비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승인예측설은 법원의 판결로 지지된 바도 있습니다. 즉 서울지방법원 2002. 12. 13. 선고 2000가합90940 판결(피고 제출의 참고자료 7.)에서 법원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그와 동일한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이며, 이에 따라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있고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여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소송계속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와 동일한 사안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한다면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 판시하여, 승인예측설을 정면으로 도입하고, 원고가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미국 및 대한민국 법원에 각각 제기한 소송을 민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는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제기된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피고의 2003. 3. 12.자 준비서면 제2 내지 6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김돈영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일본국에서 제기한 선행사건에서의 일본국 재판소의 판결을 장차 우리나라에서 승인될 것이 예측되어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은 결국 국제적 중복제소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피고가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본건 소송은 원고 김돈영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현재 일본국에서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뒤 항소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중복하여 제기한 것입니다. 즉, 원고 김돈영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본건 소송과 일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행소송은 그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7960 판결의 취지에 따를 때, 일본국 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승인예측설에 따라 본건 소송 중 원고 김돈영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각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고들은 일본국에서 제기된 선행소송과 본건 소송과는 당사자 및 소송물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일본국에서 제기된 선행사건이나 본건 소송의 청구내용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이 사건 소장 제42 내지 44면과 원고들이 2001. 2. 9. 참고자료로 제출한 1999. 3. 28. 일본국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서 선고된 원고들이 일본국에서 본건 소송 이전에 제기한 선행사건에 대한 판결 번역문 제21, 22면을 대조하여 보면 그 청구내용이 완전히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국에서의 선행소송의 공동피고였던 일본국과 능증이 본건 소송에서는 제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두 소송이 전혀 다른 별개의 소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승인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호),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 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민사소송

법 제217조 제2호),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이른바 '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4) 상호보증에 있을 것(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호의 요건과 관련하여서 보면, 일본국의 재판소는 일본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선행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짐은 당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요건과 관련하여서 보면, 일본국에서의 선행소송에 있어서 원고 김돈영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관계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고 소송을 진행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의 요건과 관련하여 보면, 일본국에서의 선행소송에 있어서 원고들이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한 이상 소송진행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 바 없고, 실체적인 면에서도 선행소송의 사안은 본건 소송과 마찬가지로 미불임금 및 손해배상이라는 재산적 청구이므로 그 청구의 인용 혹은 배척 여부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가능성이 없으며, 실제 선행소송에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하여 기각된 것으로서 공서양속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원고들은 이와 관련하여 선행소송에서의 일본국 법원의 판결이 일본국의 대한제국의 병합과 통치권의 행사가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서 국가무담책의 원칙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승인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은 피고가 아니라 일본정부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으로서 피고에 대한 본건 소송과는 무관한 부분이므로 이를 이유로 선행소송의 판결이 대한민국 내에서 승인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의 요건과 관련하여 보면, 앞서 본 위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7960 판결은 '상호보증은 반드시 당사국간의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명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쌍방의 국내 법령 또는 관례 등에 의하여 법률상 상호 보증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족하다. 나아가, 외국의 승인요건이 국내법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중요한 점에서 동일하거나 보다 완화된 요건 하에서 승인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의 것이라면 상호의 보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판결의 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일본국 민사소송법 제118조는¹ 그 내용이 우리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실질적으로

1 일본국 민사소송법 제118조의 원문 및 그 번역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外国裁判所の確定判決の効力)

第一百八条

外国裁判所の確定判決は、次に掲げる要件のすべてを具備する場合に限り、その効力を有する。

- 一 法令又は条約により外国裁判所の裁判権が認められること。
- 二 敗訴の被告が訴訟の開始に必要な呼出し若しくは命令の送達(公示送達その他これに類する送達を除く。)を受けたこと又はこれを受けなかったが応訴したこと。
- 三 判決の内容及び訴訟手続が日本における公の秩序又は善良の風俗に反しないこと。
- 四 相互の保証があること。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

제118조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에 언급한 요건의 전부를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 1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외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될 것.
- 2 패소한 피고가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공시송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송달을 제외한다)을 받았을 것 또는 이것을 받지 않았지만 응소하였을 것.
- 3 판결의 내용 및 소송절차가 일본에 있어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것.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우리나라와 일본국 간에는 판결의 승인에 관한 상호보증의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실제로 제주지방법원 1998. 5. 28. 선고 97가합2982 판결(피고 제출의 참고자료 8.)도 '일본국은 일본 민사집행법 제22조, 제24조에서 우리 민사소송법 제467조, 제477조와 같이 외국판결의 효력을 승인하는 집행판결 절차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승인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 민사소송법 제118조는 우리 민사소송법 제203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해당합니다)와 거의 같은 취지이고 일본국 실무관례상으로도 외국판결(우리 나라 판결을 포함하여)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한 이를 존중하여 승인하고 있는 것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일본국에서 우리 나라 판결이 집행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나라와 같다고 볼 것이어서 일본국과 우리나라는 상대국 판결 승인에 있어 상호보증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국에 계속 중인 선행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장차 확정될 판결의 효력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독일의 통설이자, 일본의 유

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이제 와서 뒤늦게 국제재판관할을 가지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부산지방법원에 본건 소송을 중복하여 제기한 것은, 원고들 스스로 선정한 일본국 재판소에서의 소송수행 결과가 불리하다고 판단하자,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외국에서 제기함으로써 피고에게 소송 내에서는 물론 소송 외에서 피고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재판외적으로 본건 분쟁을 원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결하려는 부당한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도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건 소송의 진행 중에 일본국에서 진행중인 선행소송의 판결이 1심 판결 내용대로 원고들의 패소로 확정된다면, 본건 소송이 일본국 법원의 선행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57, 58 판결은 기판력의 저촉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진행 중인 소송과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확정된 외국판결이 존재한다면 법원으로서 그 외국판결이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구 민사소송법 제203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해당합니다)에서 정한 승인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국에서 진행중인 선행소송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한 승인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므로 만약 본건 소송의 진행 중에 선행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본건 소송은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는 모두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소멸된 권리로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거나,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합니다.

가. 한일 청구권협정의 내용

1951. 10. 20.부터 한일회담 예비회담이 동경에서 개시된 이후 14년이라는 장기간의 협상의 결과로 마침내 1965. 6. 22.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기본관계조약과 함께 청구권협정이 체결되어 1965. 12. 18.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 청구권협정은 제1조에서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상의 원조 및 차관의 제공 등을 밝히고 나서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

고 또는 타방채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채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채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채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채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한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에대한합의의사록(I)"[이하 '합의의사록(I)'이라고만 합니다]에서는 위 청구권 협정 제2조에서의 "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제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합의의사록(I) 2. (a)],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정하고 있습니다[합의의사록(I) 2. (g)].

또 위 합의의사록(I) 2 (g) 에서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조선 은행을 통하여 반출된 地金 및 地銀 반환청구
- ② 1945년 8월 9일 현재의 대조선총독부채권의 返濟청구

- ③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振替 또는 송금된 금품의 반환청구
- ④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던 법인의 재일재산의 반환청구
- ⑤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返濟청구
- ⑥ 한국인(자연인, 법인)의 일본정부 또는 일본인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에 관한 항목
- ⑦ 전기 제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발생한 제과실의 반환청구
- ⑧ 전기 반환 및 결제는 협정성립 후 즉시 개시하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

이중 제⑤항의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일본유가증권, (나) 일본계 통화, (다) 피징용한국인 미수금, (라)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마) 한국인의 대 일본정부 請求恩給관계, (바) 한국인의 대 일본인 또는 법인청구

나. 청구권협정의 해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권협정은 제2조 제1항에서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구권협정 제2조 제3항에서는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되어 그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되는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의 범위에 대해서, 합의의사록(I) 제2조 (g)에서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된다는 점과, 그에 대해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사이에 체결된 국제조약인 청구권협정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청구권협정의 문언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본국 국민들에 대한 모든 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국 국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된 샌프란시스코우 평화조약 제4조 (a)에서 정한 권리에 대한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 사이의 재산상 채권·채무 문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갑 제21호증의 4 및 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즉 청구권협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사이의 권리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국 국민 사이의 권리문제도 해결된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국민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금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미불임금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가사 그러한 미불임금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완전

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이 명백한 8개항 요강 중에는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반제청구(제5항)"와, "한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제6항)"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 주장의 미불임금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8개항의 대일청구요강 제5항 또는 제6항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원고들은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합의로 그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의 청구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있을 수 없으며 국민의 청구권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란 예컨대 국민들이 자신의 청구권을 정부에게 처분하도록 위임한 경우이거나 청구권 처분에 관한 다른 국가와의 조약을 국민들이 승인한 경우 등이라고 하면서 청구권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 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구권협정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국회 발언 등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청구권협정은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의 해석은 대한민국 법률 해석의 문제이고, 따라서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있어서 일본정부의 국회 발언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구권협정은 당시의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의 비준을 받아 발효한 것인바, 이러한 국회의 동의를 원고들이 주장하는 국민들에 의한 승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상의 위임을 받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음

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법률제정 이외에 추가적으로 개개 국민의 위임이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어느 조약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비준을 받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별도의 위임이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권 협정이 헌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되어 국회의 비준을 받은 이상은, 원고들 주장과 같이 개개 국민의 위임이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국가가 조약으로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동안 체결된 대한민국의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제조약이나 협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들의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1951. 9. 8.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과 일본간에 체결된 대일평화조약 제4조 (a)의 "제2조에 규정된 지역에 있는 일본 및 일본국민의 재산 및 현재의 해당지역의 주민(법인을 포함)에 대한 청구권(채권을 포함)의 처리와 일본에 있어서의 전기 및 주민의 재산 및 일본과 일본국민에 대한 청구권(채권을 포함)의 처리는 일본과 전기 당국간의 특별협정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조항 및 제4조 (b)의 "일본은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지역의 미합중국 군정에 의하여 취하여진 일본과 일본국민의 재산의 처리의 효력을 승인한다"라고 한 규정도 일본국민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외교적 보호권 포기 이상의 효력은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귀결상 일본국민이 당시 미합중국 군정에 의하여 소

유권 등의 권리가 박탈되고 그 뒤 대한민국 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귀속재산이나 권리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그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원고들이 과연 이러한 결론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청구권 협정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구권의 범위에 대하여 보상청구권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배상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청구권 협정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부당합니다. 우선 청구권협정은 소멸대상이 되는 권리 등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권리나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재산적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예외가 되어야 했다면 소멸되는 예외를 정하고 있는 청구권협정 제2조 제2항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예외가 없다는 점은 청구권협정의 문언상 명백합니다.

다. 공개된 청구권협정 관련문서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개인의 일본국이나 일본국 국민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점은 2005.에 공개된 청구권협정 관련 정부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1964. 4. 7. 당시 재무부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 한일회

○ ○

답이 타결될 경우 이러한 민간인 보유 대일재산에 대한 보상조치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정부의 대일본재산청구권 총액 중 이러한 민간인에 관련된 부분은 이것이 엄연한 사유재산이라는 점, 또 정부는 다만 민간인들을 위하여 재산청구권 행사를 대행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한일회담이 종결되는 대로 일본으로부터의 보상금액 중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상조치를 강구해 주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사료됩니다."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무부장관은 민간인 보유 대일재산을 정부가 보상하여야 함을 전제로 그 보상조치에 대한 사전 대책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을 제10호증).

또한 1964. 5. 8. 당시 외무부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우리측 청구권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국민(법인 포함)이 보유하는 개인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번에 일본과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전기한 개인청구권도 포함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는 개인청구권 보유자에게 보상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부로서는 개인이 정당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즉 외무부장관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개인의 대일본 청구권이 모두 해결됨을 전제로 정부의 보상의무를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을 제11호증).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당시 수석대사의 외무부장관에 대한 1965. 4. 17.자 전문 역시 당시 한국측 대표인 이공사가 "아측으로는 이시이나 합의사항에 의하여 일단 개인관계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앞으로의 문제는 그것이 양국이 각각 국내적으로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가 남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일본측과의 회담시에 발언하여,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갑 제21호증의 10).

이러한 내용은 1965. 4. 20. 일본국 외무성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의 회의록(갑 제21호증의 11)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즉 당시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규석은 회의 초반에 "우리측으로는 이-시이나 합의사항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완전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청구권이 해결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하여는 앞으로 양국이 각각 국내적으로 여하히 소화하며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갑 제21호증의 11 제846면), 일본측 대표인 사다케는 "여러 가지 개인의 청구권이 없어진다는 것이므로 중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갑 제21호증의 11 제848면) 청구권협정의 결과 개인이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무부 아주국장이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에게 1964. 2. 5. 발신한 협조전에 의하면, 경제기획국장의 기본협정이 체결되면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어 정부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외무부 아주국장이 "대일 청구권 금액은 양측의 법이론과 사실인정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결국 김-오히라 합의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일괄 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며, 정부는 개인청구권을 각 항목별로 이에 대한 가부, 기준 및 방법으로 강구하여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라고 회신하여 마치 청구권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 듯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갑제21호증의 5 제102면). 그러나 위 회신 역시 일정한 개인청구권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하

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함을 긍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신 이후 을 제10호중 및 을 제11호중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한일협정에 의하여 개인의 청구권이 전부 소멸하는 이상 그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 아주국장의 회신은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참고할 가치는 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 청구권협정에 기한 후속입법조치

이와 같이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개인의 대일 청구권이 소멸하고 대한민국이 이에 대한 보상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청구권협정 체결 이후에 그 후속조치로 입법된 제반법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66. 2. 19. 법률 제1741호로 제정된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바, 위 법률 제5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청구권자금 중에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전항의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기준·종류·한도 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보상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1971. 1. 19. 법률 제2287호로 제정된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

항에 규정된 대일민간청구권의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2조 제1항 본문은 신고대상이 되는 민간청구권의 범위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의 범위는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일본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으로서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것(이하 "대일민간청구권"이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권자금의운용및 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은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이라고만 규정하여 일본국이 아닌 일본인·일본법인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도 있으나,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본문은 민간청구권의 일본국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일본국 국민에 대한 것도 포함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본문에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인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일본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는 청구권협정 제2조 제2항 a호의 예외사유를 반영한 것으로서,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이 청구권협정의 실행을 위하여 제정된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접수된 민간청구권 신고에 대한 보상은 1974. 12. 21. 법률 제2685호로 제정된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위 법률에 의하여 1975. 7. 1.부터 1977. 6. 30.까지 사이에, 83,519건에 대하여 9,187,693,000원의 보상금이 현금 또는 보상증권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은 인명피해의 경우 보상대상을 사망자로 한정하고 있었고 보상대상의 확인에 있어서도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었으므로 누락된 자가 적지 않았던 점은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한국정부의 대응이 불충분하였다는 문제에 불과하고, 일단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포함된 권리의무관계는 그 국내적 보상실시나 그에 대한 개인적 만족여부와 관계없이 협정의 효력에 의하여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권리보호는 대한민국 정부와 그 국민간의 문제로만 남게 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피고 제출의 참고자료 2. 정인섭,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대상범위에 관한 연구" 제513면 참조).

한편 갑 제21호증의 1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05. 8. 26.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외교문서 공개와 관련하여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령한 무상자금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위 민관공동위원회는 1975년 대한민국 정부의 보상 당시 강제동원 부상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하였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인 2006. 9. 25.자로 국회에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 법안에 의하면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군인,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던 사람들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망, 행방불명, 부상에 대한 위로금 지급과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등에 대한 미수금지원금 지급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법률안 제4조 제1항은 사망, 행방불명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정하면서 과거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위로금에서 일정 액수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 법안의 내용은 과거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강제동원된 한국인들의 사망이나 부상 등의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급료 등의 미수금 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었다는 점 및 이러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어 이를 대한민국정부가 보상하여야 한다는 점, 그런데 과거사망자에 대한 보상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위 법률안을 통하여 추가적인 보상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원고들이 갑 제21호증의 16으로 제출한 법률안은 국회에 최종적으로 제출된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는 위 법률안의 국회제출본을 추가로 서증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을 제12호증).

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및 일본국민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어 다룰 수 없게 됨으로써 소멸되었고, 청구권협정에 의한 청구권자금을 수령한 대한민국 정부가 민간청구권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일민간청구권신고
에 관한 법률"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여
민간청구권에 대한 보상조치를 시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미불임금 및 손해배상청구는 그
당부를 살필 필요 없이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된 것이 명백하
여, 권리보호의 이익을 흠결한다고 할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
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되었음이 명확하여 이
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은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이유 없으
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아래 제8항에서 자세히 살펴볼 바와 같이 피고와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별개회사로서, 피고는 2차세계대전 종전 후 60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시
점에서 원고들이 주장의 2차세계대전 당시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
는 상태입니다. 다만 원고들 역시 그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
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편
피고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당시 징용은 일본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국가권력작용으로서 민간기업인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이에 관여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일본정부가 행한 징용에 대해서 구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별개의
회사인 피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더욱 더 적절하지 않은 것으
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시 원고들이 근무한 구 미
쓰비시중공업의 조선소와 기계제작소의 2개의 공장은 모두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 시내 중심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공장에서 근무한 한국인 근로자들이 직접적인 원폭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고(소장 제25면 원고 김돈영 부분 및 소장 제29면 원고 정창희 부분 참조,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공장에서는 원폭투하로 인하여 3명만이 사망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을 제4호증 및 을 제6호증 각 참조), 원고 이병목, 김돈영을 비롯한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공장에 근무한 한국인 근로자들 역시 원자폭탄 후에 설치된 야전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소장 제22면 원고 이병목 부분 및 원고 김돈영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참조), 구 미쓰비시중공업에서는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 파괴된 기숙사 대응으로 천막을 설치하여 한국인 근로자들을 수용하였고(소장 제22면 원고 이병목 부분 및 원고 김돈영 본인신문결과 참조, 을 제4호증 참조), 한국인 근로자들은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에도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기숙사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었으며(소장 제29, 30면 원고 정창희 부분 및 소장 제34면 원고 정창화 부분 각 참조), 원자폭탄 투하 2,3일 후부터는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공장에 근무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식사 배급을 재개하였고(소장 제30면 원고 정창희 부분 참조),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패전으로 인한 혼란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인 1945. 9. 중순경에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비용으로 배편을 마련하여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귀국조치를 취하여 원고 김돈영의 경우에는 구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수배한 배편에 무료로 승선하여 귀국한 사실(소장 제26면 원고 김돈영 부분 및 원고 김돈영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참조)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고들이 근무한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조선소와 기계제작소의 2개의 공장이 모두 당시의 최신식 공장으로서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나 병원 등의 후생시설이 완비되어 있었고(을 제4호증 및 을 제5호증의 6 각 참조)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조선소 및 기계제작소는 당시 군수물

자를 생산하던 공장으로서 그 근로자들에게는 패전 직전의 열악한 식량상황에서도 식량 배급 등에서 우선적인 조치가 취해졌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점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는 모두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사실관계를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합니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합니다.

우선 원고들 주장의 미불임금 청구권에 대해서 보면, 노역인의 임금에 대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4조 제3호) 내지는 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3년의 소멸시효기간(근로기준법 제48조) 또는 채권 일반에 대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게 될 것이고, 원고들 주장의 불법행위채권에 대해서 보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기간 및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장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민법 제766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불임금의 지급기한 및 불법행위 시점부터 이러한 시효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²

이에 대해서 원고들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노동 및 차별적인 구호조치 등은 국제법 위반의 불법행위로서 이러한 국제법상 청구권의 경우 국내법상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상의 의무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러

² 가사 일본국법이 준거법이라고 하더라도 일본국 민법 제724조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 배상청구권에 대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20년의 제척기간, 일본국 민법 제167조 제1항에 의한 채권 일반에 대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모두 경과하였음 또한 역수상 명백합니다

한 국제법상의 의무위반이라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하나의 근거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는 국내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될 것이므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국제연합의 1968. 11. 26.자 전쟁범죄및 인도에 대한 죄에 대한 시효불적용 조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을 원용하고 있으나, 우선 위 조약은 그 제목에서 분명한 바와 같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상의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조약이지 민사상의 소멸시효와 무관한 내용이고, 더욱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모두 위 조약에 가입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입선서 의요하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한일청구권협정의 존재가 원고들의 권리행사에 대한 법률적 장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고들은 다시 1965. 6. 22. 청구권협정의 체결로 인해 원고들의 이 사건 권리행사에 법률적 장애가 존재하게 되었고, 일본국에서는 청구권협정에 따라서 일본국 법률 제144호가 제정되어 그에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권리행사에 법률적 장애가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들 주장의 미불입금 청구권 및 불법행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청구권협정의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그 효력이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상황이 변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현재 본건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원고들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권협정이 원고들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청구권협정이 실제 원고들의 권리행사에 법률적 장애로서 기능한다면,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들의 본건 소송 역시 청구권협정이라는 법률적인 장애사유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국 법률 제144호가 일본국 내에서 원고들 주장의 청구권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본국 법률이 대한민국 내에서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권협정이 권리행사장애 사유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원고들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된 것이아

나라는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의 발언이 있었던 1991. 8. 27. 다음 날을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바 있으나, 우선 대한민국 내에서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하여 일본외무성 조약국장의 발언이 어떠한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발언은 청구권협정의 문언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더욱이 시효의 이익의 당사자인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바 없고, 위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에게 구 미쓰비시중공업을 대리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 이상 이 사건 청구권에 있어 위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의 발언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들은 다시 2005. 8. 26. 한국정부가 한일협정문서를 전면 공개하면서 일제치하의 강제동원 및 강제노역과 같은 불법행위에 관해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발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부당합니다.

우선 갑 제21호증의 15로 제출된 당시 한일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의 보도자료를 보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당시 한국정부의 입장이 일본정부의 책임이 잔존하고 있다는 취지이지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같은 민간 기업의 법적책임이 잔존한다는 취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위 보도자료는 청구권협정 자금 중에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고, 정부가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미불임금 및 불법행위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그에 대한 보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멸시효는 권리행사의 장애가 존재하지 않은 한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부터 진행되는 것인데, 위 2005. 8. 26. 자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에 어떠한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 원고들 주장의 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위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로 인하여 소멸된 권리가 다시 행사가능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 이 사건에서의 소멸시효의 항변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소멸시효의 항변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은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부당합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소멸시효 원용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는 원고들 주장의 불법행위가 강제연행 및 강제징용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원폭투하 후에 한국인 징용자에 대하여서는 일본국인에 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보호조치만이 취하여지는 차별대우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고들이 어쩔 수 없이 고

○ ○

향을 떠나서 낫선 히로시마에서 노동을 하였고 원폭피해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 사건 소송과 무관하게 피고 역시 깊은 유감의 표시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현재 본건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고들의 주장 자체 및 원고들 제출의 증거와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의 소멸시효 원용 자체가 금지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히로시마 조선소를 비롯한 두 공장은 1944. 3. 15.에 개소한 당시의 최신공장으로서(을 제4호증 38면 및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각 참조), 그 근로조건은 원고들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판결의 사안인 중국인 징용자들이 근무한 미쓰이 광산과는 달리, 근로자 전원 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설비가 구비된 기숙사와 병원 등의 후생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을 제4호증 47, 48면, 53면 및 을 제5호증의 6 각 참조). 따라서 당시가 종전 직전의 전쟁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근로조건이 소멸시효의 원용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가혹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참고자료 4. 근로조건 대비표 참조). 그리고 원고 김돈영이 본인신문시에 인정 한 바와 같이 히로시마의 두 공장에서는 작업의 난이도에 불문하고 일본인과 한국인이 같이 조를 편성하여 근무하였고 광산의 경우와 같은 비인간적인 차별대우가 행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원폭투하 후 부상자들은 일본국인이거나 대한민국인이거나 불문하지 않고 기존의 병원건물 및 원폭투하 후에 설치된 야전병원에서 가능한 치료를 받았습니다(을 제4호증 제52면 참조).

그리고 원고들의 청구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이 아닌 미불임금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원용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은 미불임금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한일국교수립 전까지는 한일협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회피하면서 자료를 은닉 및 폐기하였고, 한일청구권협정 이후에는 청구권협정 및 일본국 법률 제144호에 의하여 원고들 주장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하면서 원고들에게 성의를 보이겠다고 기망하여 왔다면서 이러한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부정한 의도로 보상을 시일을 끌어왔다는 것은 원고들의 추측 내지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할 뿐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의 진실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일관하여 원고들의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되었음을 다투는 한편, 추가적으로 가사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라도 원고들의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의하여 이미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보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를 신의칙에 위반한 방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제기된 본건 소송과 유사한 사건에서 미국법원 역시 그 원고들의 청구를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실이 있습니다(을 제2호증 참조). 만약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본건 사안이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기한 것이어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면, 미국 법원에서 위와 같이 판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7. 공탁 관련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불임금청구권 중 미불임금 및 국민저축 상당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들 스스로도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1948. 9. 7.경 1945. 7. 내지 9.분 미불임금 및 국민저축 상당부분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소장 제43면 및 원고들이 2001. 2. 9. 참고자료로 제출한 1999. 3. 28. 일본국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서 선고된 원고들이 일본국에서 본건 소송 이전에 제기한 선행사건에 대한 판결 번역문 제60면 및 을 제7호증 각 참조), 결국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권은 위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들의 근무 및 공탁이 구 미쓰비시중공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가 그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하나 당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탁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원고들이 일본국 내에서 근무한 이상 일본국 법원에 대한 공탁에 어떠한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원고들은 망 박창환에 대한 공탁서인 을 제7호증과 관련하여 그 기재의 적절성을 다투고 있으나, 일본정부에 의하여 징용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당연히 주소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당시 통용되었던 창씨개명전 이름에 의하여 공탁한 것으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8. 동일성 문제

마지막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미불임금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구 미쓰비시중공업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다른 회사이므로 원고들이 구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하여 그 주장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들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피고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동일성이라는 문제는 국제사법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일본국 법률에 기하여 설립된 법인인 이상 일본국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0041,30058 판결,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등 다수)"이라는 점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 중 어떠한 채무가 신계정에 속하는 채무로서 피고에게 승계되었고, 어떠한 채무가 구계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 역시, 외국법인 일본국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 및 기업재건정비법의 해석·적용의 문제로서 일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국 재판소는 이 문제에 있어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미불임금 및 손해배상채권은 구계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을 제1호증 판결문 중 2 피고 회사의 책임, 2 피고 회사에 의한 채무 승계 부분 참조, 변역문 제39면 내지 제43면).

즉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1946년 법률 제7호로 제정된 회사경리응급조치법상의 특별경리회사이자 같은 해 법률 제40호로 제정된 기업재건정비법상의 특별경리주식회사로 되었는바, 그 뒤 1949년 7월 4일 기업재건정비법상에 의한 재건정비계획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3일 그 신청한 계획 내용대로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50년 1월 11일 그 재건정비계획에 따라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해산되고,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기업재건정비법상의 제2회사로서 중일본중공업 주식회사(1952년 5월 29일에 신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1964년 6월 1일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와 동일본중공업 주식회사(1952년 6월 1일 미쓰비시일본중공업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서일본중공업 주식회사(1952년 5월 27일에 미쓰비시조선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상 3개 회사를 '제2회사 3개사'이라고만 하겠습니까)가 각 설립되었습니다. 그 뒤 1964년 6월 30일 제2회사의 3개사 중 중일본중공업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가 다른 2개사를 흡수하는 형태로 하여 위 제2회사 3개사들이 합병하여 현재의 피고 회사가 된 것입니다.

전후에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회사경리응급조치법상의 특별경리회사에 해당되게 되었음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사경리응급조치법상의 특별경리회사는 동법 제1조 제1호에서 정한 일정한 시점(1946년 8월 11일 오전 0시를 의미하며, 이하 "지정시"라 합니다)에 신 회계계정과 구 회계계정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바(동법 제7조 제1항), 지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목록상의 동산, 부동산, 채권 기타 재산 중 '회사의 목적인 현재 행하고 있는 사업의 계속 및 전후산업의 회복진흥에 필요한 것'에 한하여 신 회계계정에, 그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구 회계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조 제2항). 또한 특별경리회사는, 지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원인에 근거하여 발생한 수

입 및 지출은 신 회계계정의 수입 및 지출로, 그 이전의 원인에 근거하여 발생한 수입 및 지출은 구 회계 계정의 수입 및 지출로 회계상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위 회사경리응급조치법 제7조는 적극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항도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시 이전의 원인에 근거하여 이미 발생한 채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동법상 명시적인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동법의 목적이 전쟁으로 인한 보상을 중지함으로써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여 민간 수요의 생산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위 전시 보상 중지에 수반되는 손실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필요한 조치를 확립하는 것이라 해석되는데다가, 나아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지정시 이전의 원인에 근거하여 발생한 특별경리회사에 대한 채권은 '구채권'으로 표현하고 있어(동법 제12조) 당연히 구 회계계정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지정시 이전의 원인에 근거하여 이미 발생한 특별경리회사의 채무는 모두 구 회계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들 주장의 구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및 미불임금채권 및 이와 관련한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는 그 발생 원인이 모두 지정시인 1946년 8월 11일 오전 0시 이전이므로 구 회계계정에 속하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전신인 제2회사 3개사는, 기업재건정비법상의 특별경리주식회사인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신 회계계정에 속하게 된 자산을 출자받아 설립된 것인바, 이러한 경우 동 법 10조 1항에 따르면 그 출자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지정시 이후 특별경리주식회사의 신 회계계정에 따라 부

담하여야 할 채무만을 승계하게 됩니다. 당시 구 회계계정에 속하는 재산과 채무는 신설된 제2회사 3개사가 아닌 소외 능중 주식회사에 승계된 바 있으며, 소외 능중 주식회사는 현재까지 독립된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기업재건정비법 및 회사경리응급조치법에 의하여 신설된 제2회사가 구 계정상의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피고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재건정비법상 신설되는 제2회사가 구 계정상의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2회사가 구계정상의 채무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기업재건정비법 시행규칙(1946년의 상공, 재무, 사법, 농림, 운수, 후생성령 제1호) 7조 1항 7호 (9)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정비계획상 승계할 채무액 및 조건 등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우 주무장관에게 위 조항에 해당하는 항목에 관하여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한 정비계획인가신청서가 제출되어, 그 신청서 그대로 인가되었습니다(을 제1호증 판결문 중 2 피고 회사의 책임, 2 피고 회사에 의한 채무 승계 부분 참조, 번역문 제39, 40면). 따라서 피고의 전신인 제2회사들이 구계정상의 채무를 인수한 바는 없으며, 원고들의 주장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제2회사 3개사는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해산 및 각 회사 설립시에 거래처에 대하여 연명으로 제2회사 3개사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구 회계계정에 속한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통지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사들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호를 속용한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2회사들 내지는 피고가 구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제2회사들 내

지는 피고가 특별경리주식회사의 채무를 승계하는 취지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들은 영업양도, 위장해산, 조직변경 등의 경영주체의 변경만으로 기존의 고용관계는 일방적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구회사의 인적 구성원이던 피용자에 대하여 신회사가 별개의 법인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업재건정비법 및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같은 적법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진 제2회사 3개사의 신설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장해산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법률주장이라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일관되게 구 미쓰비시중공업과의 동일성을 강조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별개의 법인이므로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발행한 책자 등에 구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한 과거의 연혁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피고가 구 미쓰비시중공업과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확대해석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피고의 전신인 제2회사 3개사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음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습니다.

9.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거나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함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점을 두루 살피시어 아무쪼록 한일양국 관계가 과거에 얽

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재판
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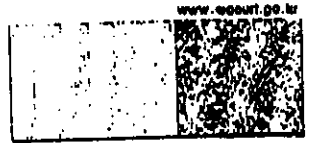
증거자료

1. 을 제12호증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
률안(국회제출분)

2006. 12. 14.

위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최창용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귀중



부산지방법원

판결(조정)일	2007. 2. 2.
판진(결정)송달일	2007. 2. 6.
상소마감일	2007. 2. 20.

제 6 민 사 부

판 결

2007년 2월 6일자

판결문이 송달됨.

사 건 2000가합7960 손해배상(기)등
원 고 1. 망 박창환의 소송수계인

→ 한노 만기일임

2007년 2월 20일 임.

박재훈 (460620-1057531)

평택시 비전동 886-14

2. 이근목 (260228-1037718)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173

3. 이병복 (230824-1252029)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599-2

4. 김돈영 (230925-1182613)

인천 남동구 운연동 28

5. 정창희 (230919-1079411)

안산시 성포동 592-2 현대아파트 101동 10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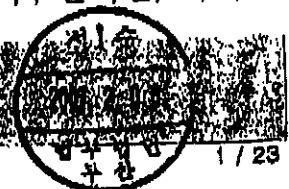
6. 정상화 (231025-1006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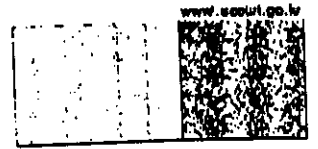
서울 성북구 길음동 877-137 삼보아파트 101동 107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최
봉태, 김준곤, 송혜익),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
사 이민종, 정수연, 박세경, 전해철, 오재창, 최윤수, 윤치환, 박재



알파 서초지부
TEL: 3477-6866
FAX: 3477-6863





형),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정재성)

피 고 미쓰비시(三菱)중공업 주식회사

일본국 도쿄도 치요다구 마루노우치 2정목 5번 1호

(日本國 東京都 千代田區 丸の内 2丁目 5番 1号)

대표취체역 마스다 노부유키(増田信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불(담당변호사 최창용)

변 론 종 결 2006. 12. 15.

판 결 선 고 2007. 2.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들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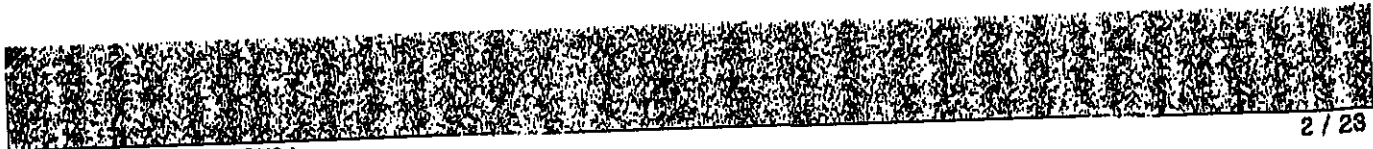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창환과 원고 이근목, 이병목, 김돈영, 정창희, 정상화의 강제징용과 피폭 피해 경위



2007-0001333836-CCK24



(1) 박창환과 원고 이근목, 이병목, 김돈영, 정창희, 정상화(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모두 1923년경부터 1926년경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서울, 경기, 충남 등지에서 거주하고 있던 자들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1910. 8. 22. 대한제국과 사이에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한 후 1937년 일어난 중일전쟁과 1941년 일어난 태평양전쟁을 치부면서 군수물자 생산 등에 있어 국가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38. 4. 1.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고 1944년 9월부터는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강제징용을 실시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 등은 1944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 사이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각자의 주거지를 떠나 부산항으로 이송된 다음 연락선을 이용하여 일본 시모노세키항에 도착한 뒤 일본 히로시마로 가서 그 곳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의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 노무자로 배치되었는데, 위와 같은 이송 및 배치 과정은 일본군, 일본경찰 및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소속 담당자의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3) 그 후 원고 등은 각자의 작업장에서 월 2회의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철판을 자르거나 동판을 구부리는 일, 배판일 등에 종사하였고, 하루 작업이 마치면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마련한 숙소인 료로 돌아가 숙식을 해결하였는데, 식사의 양이나 질은 현저히 부실하였고 다다미 12개 넓이의 방에 10명 내지 12명의 피징용자들이 함께 생활하였다. 또한 숙소 주변에는 첩조망이 쳐져 있었고 근무시간은 물론 휴일에도 헌병, 경찰 등에 의한 감시가 삼엄하여 생활의 자유는 거의 없었으며,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의 서신 교환도 사전 검열에 의하여 그 내용이 제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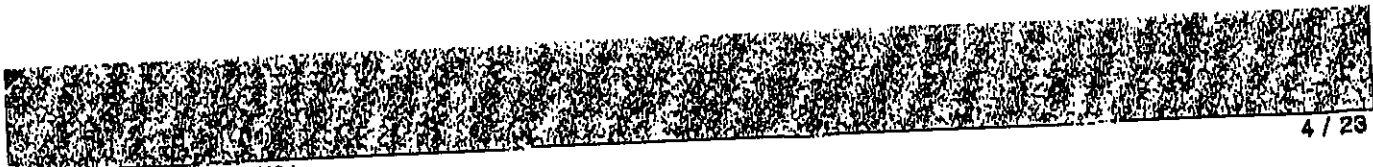
(4) 그런데 1945. 8. 6.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부하됨에 따라 위 기계제작소와 조선소 및 료 등이 모두 파괴되어 작업이 중단되었고, 그 와중에 원고 등은 부상을 입은 채 각자 일용 노동 등으로 귀국 비용을 마련하여 1945. 8. 15. 일본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이 종료된 직후인 1945년 8월 말정부터 같은 해 10월 말경 사 이에 원고 이병복은 UN군의 선박을 이용하여, 원고 김돈영은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마련한 배편을 이용하여, 박창환과 나머지 원고들은 밀항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5) 원고 등은 귀국 후 강제징용 이전에 다니던 직장을 잃는 등 종래의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한 채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피폭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최근까지도 전신권태감, 호흡 곤란, 피부질환, 시력 감퇴 등의 각종 신체적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나.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의 상황

(1) 대일평화조약의 체결

태평양전쟁이 종전된 후 1951. 9. 8.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한 연합국과 일본국은 전후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조약 제4조 (a)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위 조약 제2조에 규정된 지역에 존재하는 일본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그리고 위 지역의 통치 당국 및 그 국민을 상대로 한 청구권과 일본국에 존재하는 위 지역의 통치 당국 및 그 국민 소유의 재산, 그리고 위 지역의 통치 당국 및 그 국민의 일본국 및 일본국 국민들에 대한 청구권의 처리는 일본국과 위 지역의 통치 당국간의 특별 협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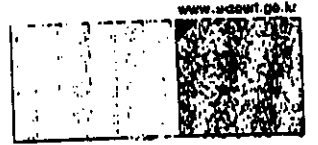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약과 부속협정의 체결

대일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취지에 따라 1951년 말경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국교정상화 및 전후 보상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여 마침내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약과 부속협정을 체결하고 그





또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1)은 위 제2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a) "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 함은 법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
되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g)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건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
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위 합의의사록에 적시된 대일청구 8개 요강에는, 일본으로 반출된
지금(地金) 및 지은(地銀), 조선총독부 체신국에 대한 각종 저금, 채권 등, 1945. 8. 9.
이후 일본인이 한국의 은행으로부터 인출해간 예금액, 대체 또는 송금된 금품, 한국 법
인의 재일 재산, 한국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일본의 유가증권, 은행권 등과 함께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한국인의 대 일본
국정부 청구 은급(恩給)관계, 한국인의 대 일본인 또는 법인 청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3) 청구권협정에 따른 후속조치

위 청구권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일본은 1965. 12. 17. 법률 제144호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협정 제2조
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여 일
본 국내적으로 청구권협정 제2조에 규정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또
는 일본 국민에 대한 청구권을 소멸시켰고, 한편 대한민국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수입
되는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66. 2. 19.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에 이어 1971. 1. 19.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판한 법률'을 제정하여 10개월간 국민의 대인청구권을 신고받은 결과 총 10만 9,54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바, 위 신고분에 대한 실제 보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1974. 12. 21. '대인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75. 7. 1.부터 1977. 6. 30.까지 사이에 총 83,519건의 신고분에 대하여 총 9,187,69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위 각 법률은 1982. 12. 31. 모두 폐지되었다. 그런데 위 각 법률은 일본국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자 중 피징용사망자에 대한 보상만을 규정하였을 뿐이고 피징용부상자의 보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 등은 현재까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4) 피고의 설립

한편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이후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는 1946년 일본에서 제정·시행된 회사경리용급조치법 및 기업재건정비법상 복별정리주식회사로 지정되어 1950. 1. 11. 해산한 다음, 그 현물을 흡수하여 중일본중공업 주식회사, 동일본중공업 주식회사, 서일본중공업 주식회사가 각 설립되었고, 이 중 중일본중공업 주식회사가 1964. 6. 30. 위 나머지 2개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피고가 설립되었다(이하 위 해산 전의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구 미쓰비시'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소의 제기

(1) 원고 김돈영을 제외한 원고 등은 1995. 12. 11. 일본국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 이 사건 피고를 상대로 구 미쓰비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위 재판소는 1999. 3. 25. 위 손해배상금청구가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 소정의 20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고 미지급 임금청구 역시 1년 또는 10년





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위 소송의 원고들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 역시 기각됨에 따라 위 원고들의 상고로 현재 이 사건 전소는 일본국 최고재판소에서 계속 중이다.

(2) 그런데 원고 등은 일본국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의 위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00. 5. 1. 이 법원에 이 사건 전소에서 주장한 위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한편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01. 2. 24. 원고 등 가운데 박창환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 중 원고 박재훈이 박창환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등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됨에 따라 박창환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한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김돈영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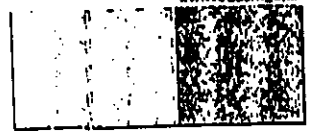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구 미쓰비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들은, 구 미쓰비시는, 일본국의 침략전쟁에 편승하여 원고 등을 강제연행한 다음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하였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직후 일본인 노무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한 것과는 달리 원고 등에 대하여는 피난장소나 식량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피폭 현장에 방치하였으며, 일본 정부의 국민징용령에 의한 징용 사유가 종료한 후에는 원고 등을 대한민국에 안전하게 귀환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구 미쓰비시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적으로는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1930년 체결된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조약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뉘른베르그(Nürnberg)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및 당해 재판소의 관권에 의해 승인된 국제법의 제 원칙(이하 '뉘른베르그 제 원칙'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하고, 국내법적으로도 우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구 미쓰비시가 원고 등에게 가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 1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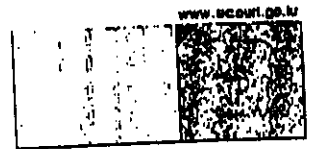
(2)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주장

또한 원고들은, 구 미쓰비시가, 원고 등을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하면서 약정된 월급의 절반을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직접 송금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 등에게 직접 지급하던 월급에서 국민저금 명목으로 공제했던 돈을 강제징용 사유가 종료한 뒤 원고 등에게 반환하지 않았으며, 원고 등에게 직접 지급하던 월급도 1945. 6. 21.경 이후부터는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라 아래 기재 각 돈의 합계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합계액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원고들 1인당 적어도 100만 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으로 각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 ① 송금약속 상당액 : (당시 후생연금법 규정의 평균임금에서 기숙사비와 식비의 합계 13엔 및 피보험자 부담의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 × 1/2 × 가동월수
- ② 국민저금 상당액 : 최소 50엔
- ③ 1945. 6. 21.부터 1945. 8. 31.까지의 임금 상당액 : (당시 후생연금법 규정의 평균임금에서 기숙사비와 식비의 합계 13엔 및 피보험자 부담의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 × 1/2 × 2.33개월

나. 피고의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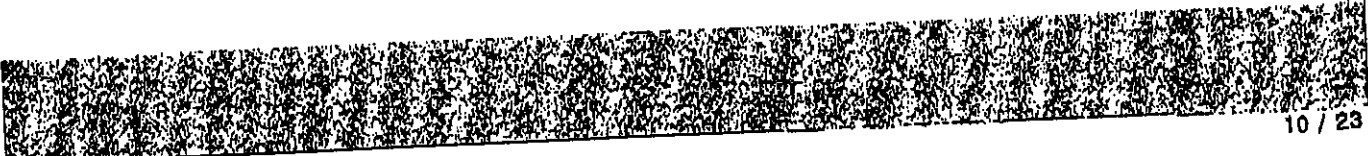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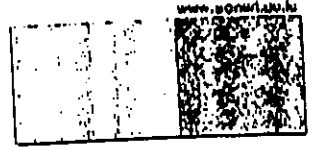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이 사건 소는 ① 국제재판관할권이 없
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되었고, ② 국제적 중복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본안에 관하여는 원고들에 대한 구 미쓰비시의 손해배상금 내
지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루면서 설령 구 미쓰비시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
도 ① 피고는 구 미쓰비시와 동일성이 없을뿐더러 구 미쓰비시의 채무를 승계한 바도
없어 구 미쓰비시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고, ② 원고들의 구 미쓰
비시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은 청구권협정 제2조 및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I)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소멸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으
며, ③ 구 미쓰비시는 1948. 9. 7.경 원고 등을 위하여 미지급 임금과 국민저금 상당분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으므로 적어도 원고들의 임금 채권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대한민국 법원의 이 사건 소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의 인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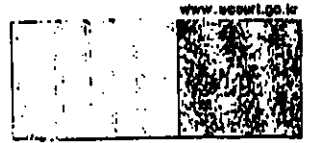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
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
로 기본적으로 위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적 사건에 관한 소송
에 관하여도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





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이 외국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적용됨을 정하고 있는바, 위 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등의 주소에 보통재판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수집의 용이성이나 소송수행의 부담 정도 등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용소불 강제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이념에 비추어 보아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르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분쟁이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내 사무소 등의 영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조리에 맞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국 내에 두고 있으나 1987년정 대한민국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53-11 소재 동아일보빌딩 8층에 피고의 대한민국 내 업무 진행을 위한 부산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일본인 직원 1명을 비롯한 5명의 직원을 두었고, 원고 등이 이 사건 소불 제기할 당시에 위 부산 연락사무소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부산 연락사무소가 상법의 규정에 따른 대표자 선정이나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산 연락사무소를 구 민사소송법 제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의 주장처럼 위 부산 연락사무소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대한민국의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공평이나 재판의 적정, 신속을 해치는 등 조리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실의 인정을 위한 일본 내의 물적 증거는 거의 멸실된 반면 가장 중요한 소송자료라고 할 수 있는 원고 등 본인들이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사안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치적 변동 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과 피고의 재판적인 소송수행능력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인정이 당사자간의 공평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본국 재판소에서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이미 한번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뒤에서 살펴 볼 중복제소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할 만큼 재판의 적정, 신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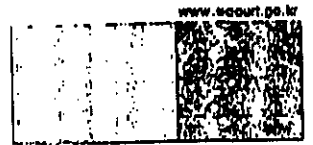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인 이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나. 중복제소 해당 여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전소가 일본국 최고재판소에 계속 중인 상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전소보다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가 후소로서 국제적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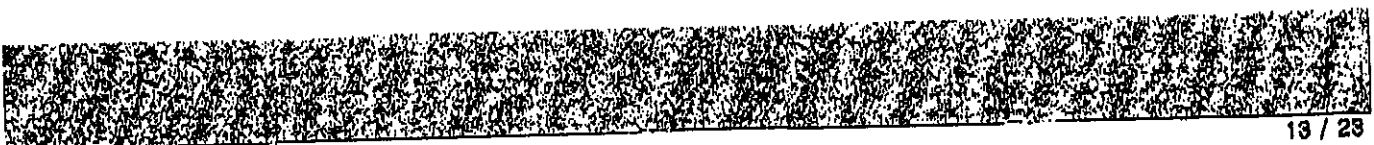
살피건대, 국제적 중복소송의 인정 여부 및 그 처리 방법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는 없으나,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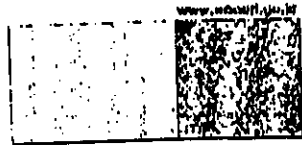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ii)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인 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으며, (iii)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고, (iv) 상호보증에 있는 경우,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위 승인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브184, 88브191 판결 등 참조),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여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정한 소송계속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한다면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소에 대한 외국법원인 일본국 재판소의 판결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여 승인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이 사건 전소가 제기된 일본국 재판소가 위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이 사건 전소의 원고들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스스로 위 재판소에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척기간 도과 내지 시효 소멸을 이유로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일본 재판소의 판결이 그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록 우리나라와 일본국 사이에 양국의 확정판결에 관하여 상호보증을 명시한 조약 등은 없으나 일본 민사소송법 제118조에서 규정한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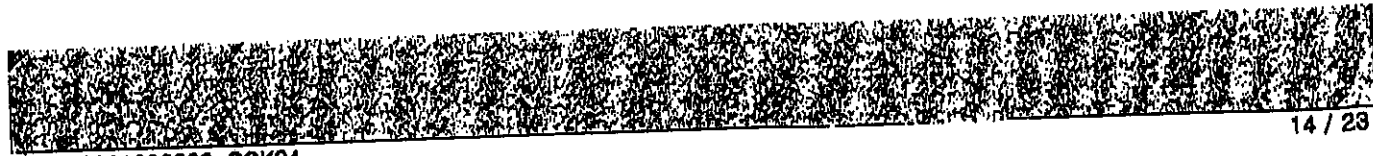




국법원의 확정판결 승인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여 실질적으로 상호보증
이 있는 경우와 다름이 없음을 피고가 주장하는 바 그대로 인정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직 이 사건 전소에 대한 일본국 최고재판소의 상고심 판
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본국 최고재판소가 향후 어떠한 법적 논리를 전개하여 위 원
고들의 청구를 판단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아울러 이 사건 전소에 대한 히토시마
지방법원의 판결 이외에 다수의 과거 일본국 재판소의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
본국 최고재판소가 위 원고들과 같은 재한 피징용자들의 손해배상 등 청구에 관한 판
단을 함에 있어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나 일본국 또는 그 국민에 의하여 자행되었던 과거의 행위에 대한 평가, 법령의 적용
및 해석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원과 그 견해를 달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
로, 이 사건 전소에 관하여 일본국 재판소가 결론 내린 확정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승
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의이나 정의관념 및 국내법질서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
는 결과를 전혀 예상 못할 바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전소에 대한 일본국 재판소의 확
정판결이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승인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소가 일본국 최고재판소에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끝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등이 스스로 일본에서 제기한 이 사건 전소에서 불리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자 다시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국제소송 절차의 남용이라고 볼 여지도 없
지 않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국 재판소의 확정판결에 대한 승인가능성이 불명확
한 점, 1995년 이 사건 전소가 제기된 이후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대한민국에서의 소권 행사가 재판상 보호받지 못할 만큼의 소권의





남용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구 미쓰비시의 국제법적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구 미쓰비시가 노예제불 금지하는 국제관습법,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제29호 조약, 뉘른베르그 제 원칙 등 국제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구 미쓰비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법상 사인(私人)의 주체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국가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국제법상 사인의 주체성을 부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다만 사인이 실제로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개개의 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정한 규범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특히 사인이 국제법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 또는 그 국민을 상대로 직접 어떤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조약 등 국제법 자체에서 해당 규범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당한 사인에게 그 피해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및 그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 절차, 효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경우나 그 국제법에 따른 사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내법적 입법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펴보면,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제29호 조약과 뉘른베르그 제 원칙의 각 규정에, 강제노동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인에게 강제노동을 실시한 주체나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처럼 노예제 금지가 국제법적 강행규정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노예제로 피해를 입은 사인이 노예제 금지불 위반한 주체를 상대로 직접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관습법



2007-0001833836-OCK24



의 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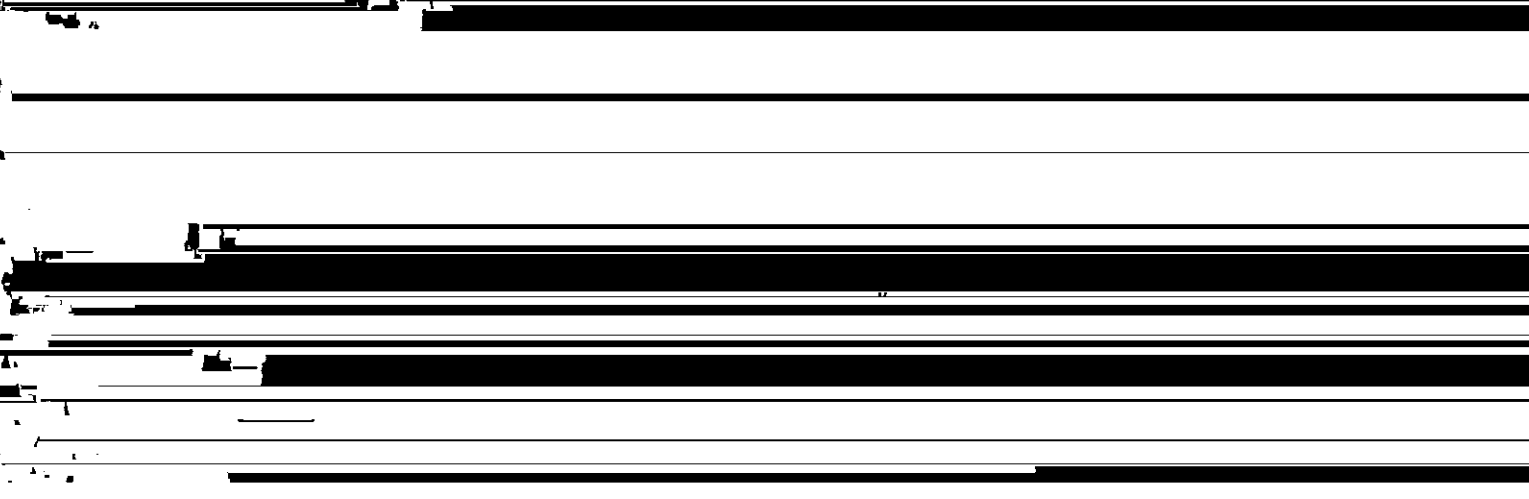
그렇다면, 원고들은 그 주장과 같은 구 미쓰비시의 과거 행위에 대하여 국제 법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피고에게 그 배상공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나. 구 미쓰비시의 국내법적 불법행위책임을 따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와 구 미쓰비시의 동일성 인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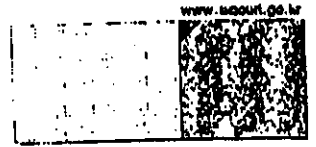
구 미쓰비시가 1950. 1. 11. 일본국 국내법에 따라 해산하고 그 현물 출자에 의하여 3개의 제2회사가 설립되었다가 다시 합쳐져 현재의 피고가 설립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의 주장에 따라 그 구체적 경위를 살펴보면, 일본국이 태평양전쟁에서 항복을 선언한 직후 일본 내 연합국 최고사령부(GHQ)에 의한 재벌 해체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패전으로 인하여 일본 기업들이 부담하게 된 엄청난 액수의 배상 및 노무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 등의 해결을 위하여 일본국은 1946년 법률 제7호와 제40호로 회사경리융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을 제정·시행하였고, 위 각 법률에 따

구 미쓰비시와 피고의 동일성 인정 시 현재계정과 구 회계계정



구 미쓰비시와 피고의 동일성 인정 시 현재계정과 구 회계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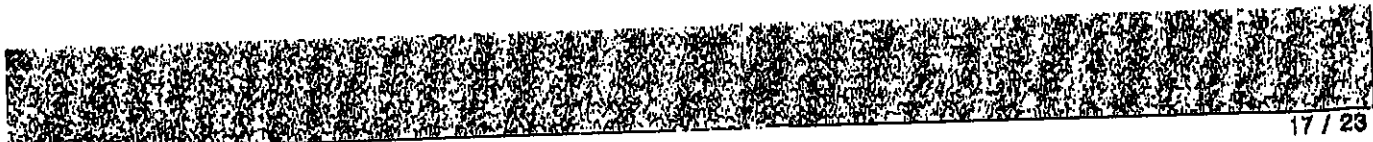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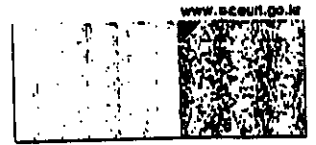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앞서 본 회사정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 등 일본 국내법은 전후 처리를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술적인 입법에 불과하고,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본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구 미쓰비시가 피고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인적, 물적 구성에는 기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위와 같이 일본국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구 미쓰비시가 해산과 제2회사 3사의 설립 및 흡수합병의 과정을 거쳐 피고로 변경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미쓰비시와 피고 사이에는 그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는 앞서 든 증거에서 나타나듯이 피고 스스로도 구 미쓰비시를 피고의 기업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2) 준거법의 결정

구 섭외사법(1962. 1. 15. 법률 제966호로 제정되었다가 2001. 4. 7. 법률 제6465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과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구 미쓰비시의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 등의 불법행위는 대한민국 내 원고 등 각자의 거주지역으로부터 일본 내 히로시마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계속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은 준거법이 될 수 있고, 나아가 현행 민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은 특별한 규정있는 경우 외에는 위 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우리나라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구 미쓰비시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이 된다.

(3) 구 미쓰비시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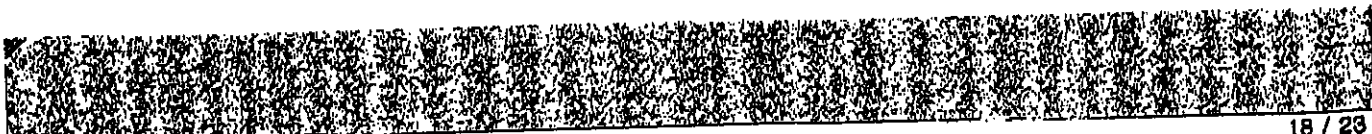


(가) 판단의 순서

이 부분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판단순서는 구 미쓰비시가 원고 등 각자에게 행한 행위의 태양을 확정된 후 그 행위가 우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원고들이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은 모두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부터 1945년 일본국의 패전 전후에 이르는 극도의 혼란기에 발생한 사실들이고, 그 발생으로부터도 60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한 관계로 그에 대한 충분한 입증에 어려워 원고 등의 당사자 진술에 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원인이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그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이미 시효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먼저 살펴 보기로 한다.

(나) 시효 소멸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시로부터 50여 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국교가 단절된 상태였던 1965. 6. 22. 이전까지는 원고들의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존재하였다고 보아 소멸시효 기산점을 1965. 6. 22.로 보더라도 소 제기 당시 이미 30여 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미쓰비시의 불법행위는 인도에 반하는 전쟁 범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효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만일 시효제도가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국교 단절, 그 후 국교 수립과 동시에





제결된 청구권협정의 존재, 대한민국 국민의 대일 민간청구권을 소멸시킨 일본 국내법 제144호의 시행 등 법률상 장애사유로 인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 시효는 진행하지 않던 중,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전면 공개된 후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 의견이 표명됨에 따라 책임주체에 대한 권리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진 2005. 8. 26.부터 비로소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그 동안 원고들의 끊임 없는 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지금까지 보여온 태도에 비추어 피고가 이제 와서 시효 소멸의 항변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도 위 반된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구 미쓰비시의 인도에 반 하는 전쟁 범죄에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도 소멸시효 제도는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766조 제2항), 원고들이 주장 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는 물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이후 대한민국 과 일본국의 국교가 정상화된 1965. 6. 22.로부터 기산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이미 경과된 후인 2000. 5. 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위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등을 비롯한 재한 피폭자들은 일본과의 국교가 수립된 직후인 1967년경부터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를 설립하고



1974년 그 하부조직으로 한국원폭피해미쓰비시정용자동지회를 설립하여 같은 해 8월 정 그 회원들이 피고를 방문하여 강제징용으로 인한 배상금 및 미수금의 지급을 촉구하였다는 것인바, 원고 등은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그 때로부터 기산하더라도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지만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그 동안 청구권협정 제2조 및 그 합의의사록의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 것인지, 혹은 우리 국민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도 포기된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왔고, 원고들이 위 청구권협정의 명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청구권협정의 존재 또는 대일 민간청구권의 소멸을 규정한 일본 국내법의 제정·시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05. 8. 26.이라는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





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다고 한 것인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대한민국과 일본간 국교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국교 수립시까지 기다리라고 하였고, 국교 수립 후에는 피고의 직접적인 배상의무는 부정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피징용피해자들에 대하여 보상을 할 움직임을 보이면 원고 등에게도 성의를 보이겠다는 태도를 보인 사정만으로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인도에 반하는 전쟁 범죄에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시효 소멸의 항변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

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등이 구 미쓰비시의 노무자로서 강제노동을 하고 대한민국으로 귀환할 당시 구 미쓰비시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남은 임금의 합계액이 적어도 각 100만 원이 넘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 김돈영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명 위와 같은 원고들의 임금 채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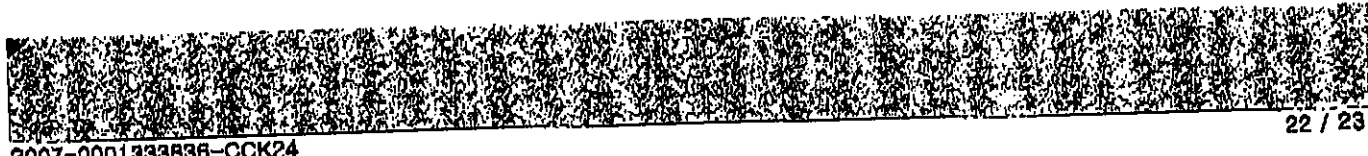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위 임금 채권 역시 최장 10년의 소멸 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 되었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당사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호	_____
	판사	류재훈	_____
	판사	황영희	_____



42KCC-988881000-4007